

「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」
지원사업 시행 공고

2022년 『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』 사업 시행에 대하여
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. 4. 4.

고용노동부 장관

1

사업 개요

□ (사업 내용) 저탄소·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위기 산업 노·사가
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환경 개선 등 지원

* (추진 근거) 「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」(21.7.22)

□ (지원 대상 사업주) 저탄소·디지털 전환 사업주*(기업규모 무관)

* 최근 3년(19년~) 이내 사업재편(산업부)·사업전환(중기부) 승인 기업,
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,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 기업 등

□ (지원 내용) 근로자 교육 및 복리후생 관련 시설* 등 임차비 지원

* 직무전환 교육·훈련 시설 임차, 기숙사 임차, 통근버스 임차 등

○ (지원 금액 및 기간) 사업주가 임차한 금액의 50%(최대 5억원)를
12개월 한도로 지원

* 단, 직무전환과 관련된 훈련·장비는 80%까지 지원(최대 5억원)

○ (신청 주기) 3개월 단위로 신청·지급이 원칙

* 지원금 신청 前 「노동전환고용안정협약지원금」참여 신청서 제출 및 승인 필수

- (신청 기한) 승인 받은 사업 참여 신청서 상 임차 등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1년 이내 신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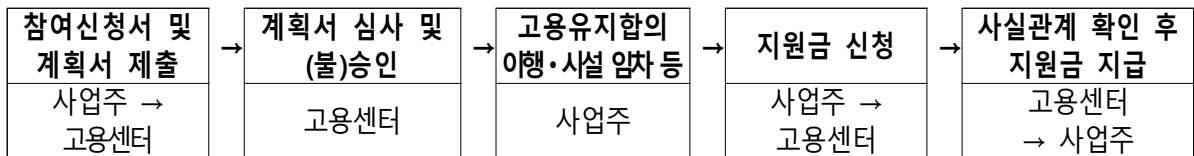
* 신청 기한 내 미신청 시 지원 불가

- (지원 요건) ① 고용유지에 대한 노·사 합의, ② 감원방지 의무 기간(지원금 받은 기간 + 1개월), ③ 최소임차금액 300만원 이상

2

지급 절차 및 신청 방법

- (지급 절차) 사업주는 참여 신청 승인받고 시설 임차 및 고용유지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



- (신청 방법) 사업주는 관련 서식을 작성(참여신청서, 지원금 지급 신청서 등)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 부서에 신청

* 관련 서식은 고용보험 누리집(www.ei.go.kr)에서 확인 가능

3

기타사항

- '22년 사업 목표인 50개소가 조기에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금년도 사업이 연도 중에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
(이 경우 별도로 추가 공고 예정)

- 자세한 사항은 '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시행지침' 참조

* 고용보험 누리집(www.ei.go.kr) "공지사항"에서 확인 가능

- 문의처: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국번없이 ☎1350)

또는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로 문의